
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
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

2024. 10.



교 육 부
[특수교육정책과]

I 추진 배경

◇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 기준 제공 필요

-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책임감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
 - ※ (고교학점제 개념) 학생이 자신의 진로·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, 취득한 학점(192학점 이상)에 따라 졸업하는 제도
-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인정 받고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학업 성취율과 출석율에 대한 기준 마련

◇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통한 책임교육 실현

-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를 돕는 책임 교육 실현 필요
- 이수기준 미도달(예상) 과목에 대한 보충(예방)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이 선택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

◇ 학점이수 인정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현장 안착 지원

- 학점 이수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방안 안내를 통해 특수 학교(급) 고교학점제 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
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특성을 감안하여 학점이수 인정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방안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을 지원

❖ 별도의 이수기준과 성취수준 설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(「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」, '21.2.17.)

Ⅱ 추진 경과

□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관련 법령 및 교육과정 개정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('21.9.)
- '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' 부분 개정을 통해 수업량 적정화 등 학점제 도입 내용 반영('22.1.)

□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

'22 (준비)	◦ 정책연구(2종) ◦ 모델 개발교 운영(7교) ◦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안내서 개발(1종)
'23 (시범 운영)	◦ 정책연구(1종) ◦ 연구학교 운영(4교) ◦ 자료개발(3종) ①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자료 ② 특수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가이드북 ③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별 성취수준 가이드북 ◦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개정(1종)
'24 (시범 운영)	◦ 정책연구(1종)^(추진중) ◦ 연구학교 운영(4교)^(운영중) ◦ 자료개발(2종)^(개발중) ① 공통 과목 최소 성취수준 자료 ② 특수교육 전문교과 최소 성취수준 자료 ◦ 특수학교(급)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개정(1종)^(개발중) ◦ 원격연수개발(10차시)^(개발중)

□ 현장 의견 수렴

- 특수교육 관계자 협의체, 건강장애 원격수업 운영 기관 협의회, 시도교육청 전문직 협의회, 모델·연구학교 컨설팅, 정책연구를 통한 설문조사(교원, 학부모 등) 등

[의견수렴 결과] 유연한 이수기준 운영을 통해 현장 부담 최소화 필요

- 이수기준이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적용시,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이수기준이 필요함

Ⅲ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

선택 중심 교육과정 적용 학생

□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목적 및 필요성

-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필요
- 교과 학습에 대한 적절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,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 요구
- 학습의 누적·결손을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고, 진로·진학과 사회 생활이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 필요

□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운영 방향

-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지원
-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방 지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
- 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최소 성취수준을 진술하고, 단원 학습 초기에 단원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 학습 요소 등 사전 지식을 확인
-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교육 활동
- 학습 결과만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에 따른 피드백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의 개별적 성장 지원

2 기본 교육과정 적용 학생

□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목적 및 필요성

-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책임지도가 목적
- 성취수준에 대한 경험은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따라 경험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가 필요
-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차원에서 모든 교과와 단원/영역별 성취수준을 수립하고 교사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계획에 기반한 교수·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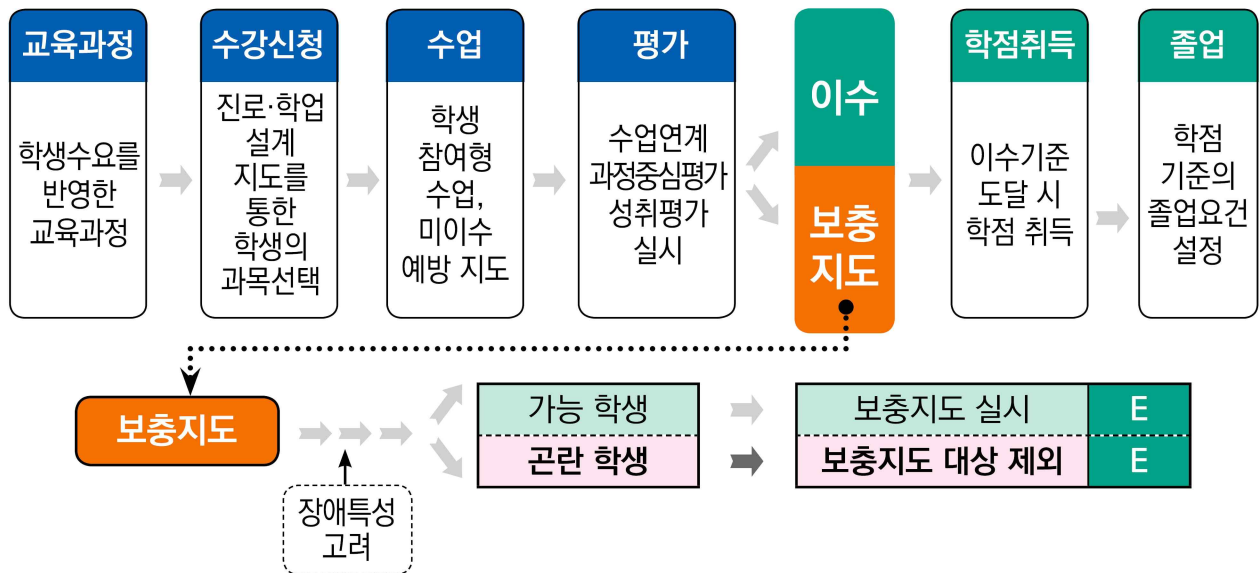
□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운영 방향

-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최소한의 성취수준에 대한 맞춤형 지도 학생을 파악하여 예방적 지도를 하는 데 중점
- 기본 교육과정에서의 최소 성취수준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와 단원/영역별 성취수준을 기준
-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교과와 단원/영역별 성취수준을 기준으로 맞춤형 지도 방법 및 내용(자료, 방법, 지원 등)을 포괄적으로 제시
- 학기초 교과 또는 학년, 학교급별 협의를 통해 계획한 맞춤형 지도 방법 및 내용을 교과별 교수·학습 계획에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
-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측면에서 교수·학습 활동 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원
-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

IV 이수기준·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주요 내용

- ❖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고교학점제 운영 방법은 동일하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, 필요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이수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적용 가능

1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점제형 학사제도 운영 체계



구분	학점이수 인정기준		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		비고
	출석률 (과목출석률 2/3 이상)	학업성취율 (학업성취율 40% 이상)	이수기준 (총 보충지도 운영 사수의 2/3 이상 참여)	운영 방법 (예방지도 연계비율, 정서지원 제한 등)	
특수교육 대상학생	적용	적용	적용	적용	이수기준 등 적용 가능 경우
	별도 적용 가능 (해당 학년 수업 일수의 2/3)	별도 적용 가능 <u>미적용 가능</u>	별도 적용 가능 미적용 가능 (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기준, 운영 방법(예방지도 연계비율,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, 대면지도 포함 여부 등)		이수기준 등 적용 곤란 경우
			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제외		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 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

• 별도 이수기준 적용 근거 •

- ▶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,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
- ▶ 「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」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학생의 장애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▶ 「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」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최소 성취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음

2

특수교육대상학생 학점 이수 인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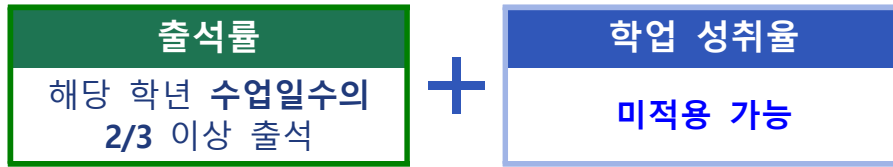
선택 중심 교육과정 적용 학생

-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,
 - 장애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과목 이수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(이수기준 설정·운영 방법) 가능
- (적용시기 및 범위) '25년 고1부터 전체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
- (운영 절차) 미도달 학생 발생 학기 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

단계	시기	운영 내용
준비 ※ 수업 및 평가 계획 수립	학기 시작전	▶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세부계획 수립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(예방·보충지도) 대상자 선정 및 지도방법 등
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	학기 초	▶ 학기초 진단평가, 교과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
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 지도	학기 중	▶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미도달 예방지도 실시 예) 방과후 지도,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보충과제 부여, 학습 멘토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,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등
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 지도	학기 말	▶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 실시 예) 방과후(또는 방학중) 대면지도(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), 온라인 콘텐츠(EBS) 수강, 보충과제 부여, 학습 멘토링 등 ▶ 1학점 당 5시수 보충 지도

- (이수 기준) 정기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, 장애 특성으로 학업 성취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별도의 이수기준 적용 여부 최종 결정
 - ▶ 이수 기준 과목 출석률(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/3 이상)+ 학업 성취율(40% 이상)
 - 이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적용
 - ▶ 별도 이수기준 출석률(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/3*)+ 학업 성취율(미적용)

*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(수료 및 졸업 등)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

※ 교양 교과, 학교 밖 교육과목,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출석률만 적용

- 이수 기준을 별도 적용할 경우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미적용 가능
-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
- **(학점 취득)** 별도 이수기준으로 과목 이수 도달시에도 해당 과목 학점 취득을 인정
 - ‘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’를 미적용 하였을 때도 학점 취득을 인정
- **(학생부 기재)**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미적용시에도 미적용 사실 미 기재

기본 교육과정 적용 학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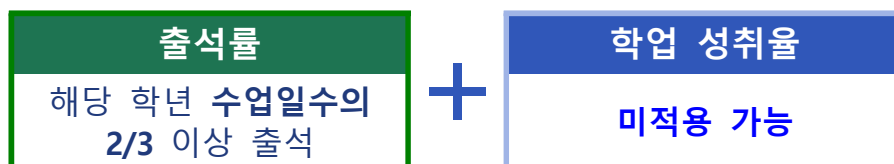
-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특성과 정도를 반영하여 별도의 과목 이수기준 적용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(이수기준 설정·운영 방법) 가능
- **(운영 절차)**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수학습 및 평가를 통한 책임 지도

단 계		운 영 내 용
준비	학교교육과정 준비	▶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예방 지도 운영을 위한 학교 내부 규정 (학업성적관리규정 등) 정비 ▶ 모든 교과 영역별 성취수준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▶ 교과 영역별 성취수준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 내용 수립
학기 초	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계획 수립	▶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과 영역별 성취수준 확인하여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 운영 계획 수립
학기 중	학생 맞춤형 지도	▶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계획을 바탕으로 맞춤형 예방 지도 실시 ▶ 과정중심평가 실시
학기 말	평가	▶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다음 학기 교수·학습 계획에 반영

- (적용시기 및 범위) '25년 고1부터 전체 과목, 일상생활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
 -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진로를 고려하여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맞춤형 예방 지도 실시
- (이수 기준) 정기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, 장애 특성으로 학업 성취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별도의 이수기준 적용 여부 최종 결정
 - ▶ **이수 기준** 과목 출석률(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/3 이상)+ 학업 성취율(40% 이상)
 - 이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적용
 - ▶ **별도 이수기준** 출석률(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/3*)+ 성취수준 도달률(미적용가능**)

*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(수료 및 졸업 등)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** 「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」 기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는 아니지만,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임



※ 일상생활 활동,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출석률만 적용

- 이수 기준을 별도 적용할 경우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미적용 가능
- 건강장애 원격수업 및 병원학급 등 위탁교육 또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에서 제외
- (학점 취득) 별도 이수기준으로 과목 이수 도달시에도 해당 과목 학점 취득을 인정
 - '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'를 미적용 하였을 때도 학점 취득을 인정
- (학생부 기재)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미적용시에도 미적용 사실 미 기재

3

최소 성취수준 보장 예방지도

선택 중심 교육과정 적용 학생

- (대상선정) 학기초, 과목이수기준(학업성취율 40%이상 및 과목 출석률 2/3이상)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
 - 별도 선정평가*를 실시하거나, 전년도 대상 학업 성취도 반영, 학생 희망, 교과 지도 교사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을 활용
- * 교과 교사가 직접 개발한 평가 도구, 교육(지원)청이 개발·보급한 평가 도구, 기초학력 진단검사(학기 초), 국가수준 평가(검정고시 등) 도구 등 활용

【대상학생 선정 방법 사례】

- A고 사례 : 자기조절 학습검사 결과,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, 담임 상담 등
- B고 사례 : 반편성 배치고사, 3월 전국 연합 모의고사, 교과 교사 협의

- (시기·방법) 학기 중, 다양한 방법* 활용 가능

* 방과후 지도, 방과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, 보충과제 부여, 학습멘토링,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, 행동중재 프로그램, (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, 상담, 컨설팅),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등 활용

기본 교육과정 적용 학생

- (대상선정) 학기초, 이수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정
 -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과(목)에 대해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*한 맞춤형 학습 지도
- * 장애유형·정도 등 학생별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적합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며, 개별화교육계획(IEP)을 작성하는 특정 과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- (시기·방법) 학기 중, 다양한 방법* 활용 가능
 - * 방과후 지도, 보충과제 부여, 학습멘토링,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(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, 상담, 컨설팅), 행동중재 프로그램, 교과 수업시간에 별도 지도 등 활용
- ※ (참고)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,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가이드북

4

최소 성취수준 보장 보충지도학업성취율 40% 미만 적용시

선택 중심 교육과정 적용 학생

- (대상·시수)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대상으로 1학점당 5시수 적용(예시: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수)
- (시기·방법) 학기 내(방학포함), 다양한 방법* 활용 가능
 - * 방과후(방학중) 대면지도(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), 온라인 콘텐츠(EBS/ 등) 수강, 보충과제 부여, 학습멘토링 등 활용
- (이수기준)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(예방지도 연계 시수 포함)의 2/3이상 참여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인정
 - 예방지도 연계, 정서적 프로그램 활용 등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

기본 교육과정 적용 학생

- (대상·시수)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 대상으로 1학점당 5시수 적용(예시: 4학점 과목의 경우 20시수)
- (시기·방법) 학기 내(방학포함), 다양한 방법* 활용 가능
 - * 방과후(방학중) 대면지도(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포함), 온라인 콘텐츠(EBS/ 등) 수강, 보충과제 부여, 학습멘토링 등 활용
- (이수기준) 총 보충지도 운영 시수(예방지도 연계 시수 포함)의 2/3이상 참여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인정
 - 예방지도 연계, 정서적 프로그램 활용 등 유연한 운영을 허용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

※ (참고)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,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가이드북

5 창의적 체험활동

- 고등학교 전체(3개년)의 실제 운영 수업횟수의 2/3이상을 출석하면 학점 취득을 인정
 - ※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며, 학생부의 특기사항에는 실제 참여한 활동을 입력
- 학기 단위 이수시간 부족 예상 학생에게 학기 내(방학기간 포함)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

6 특수교육대상학생 전·편입생 등 출결 기준 (재입학, 전입학, 편입학, 복학 등 학적 변동자, 중도 위탁 및 포기 학생 등)

- 원적교와 전입교의 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목 출결 기준
 - **(출결 기준)** 원적교와 전편입교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 신규과목으로 출석률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
 - ▶ **이수 기준** 원적교의 과목 평균 결과 횟수를 산출하여 신규 수강 과목에 반영
 - ▶ **별도 이수기준** 원적교의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/3 출석 기준을 적용

7 운영 시 유의사항

- **(운영 절차)** 학교는 ‘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’ 관련 사항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
 - **(기본계획 수립)** 예방·보충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 방법, 이수 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
 - **(방과후·방학중 지도)** 예방·보충지도의 방과후·방학중 지도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제1항제6호)
 - **(이수인정 여부)** 보충지도 참여 학생의 이수 인정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

- **(운영 주체)** 과목을 개설한 **학교의 교과담당교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운영**
 - 학교와 교사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과담당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경우,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**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내 지도교사를 결정**
 - ※ 교사 수급 등의 이유로 학교내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
- **(안내 시행)** 학교는 ‘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’ 관련 사항을 **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 필요**
 - **(학기초)** 관련 상세 내용을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
 - ※ 최소 성취수준 예방·보충지도 대상 선정 및 지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
 - **(학기말)** 대상 학생 및 학부모가 보충지도 이수 대상임을 인지하고 보충지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안내
 - ※ 최소 성취수준 보충지도 대상 선정 및 지도 운영 방법, 참여 독려 등에 대한 내용

V 향후 계획

-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 개정·보급('24.12.)
- 공통과목, 특수교육 전문교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자료 안내('24.12.)
-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훈령 및 기재요령 개정(~'24.12.)
- ‘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’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·보급('25.2.)